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0. 10. 26.
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10. 20. 김기석 의원 외 10명
나. 회부일자: 2020. 10. 20.
다. 상정일자: 제2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20.10.26.)
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김기석 의원】

가. 제안이유

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및 관리 · 운영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교통난 해소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,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과 달리 정한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수정하여 조례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전기자전거의 정의 규정 신설(안 제2조제5호)
-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6조의2)

-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맞게 수정(안 제10조제2항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석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,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및 관리·운영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교통난 해소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,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과 달리 정한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수정하여 조례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.

- 주요내용으로는

- (안 제2조제5호)에 전기자전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임.
- (안 제6조의2)에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임.
- (안 제10조제2항)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임.

- 검토의견으로는

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‘17.7.26. 일부개정, ‘18.3.22.시행)에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정이 신설 개정되어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의 대기환경 개선,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한 본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○ 따라서, 금번 개정조례안에 신설된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세부적인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전기자전거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 충전소 등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·관리한다면 관내 전기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론요지: 없 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8. 기타: 없 음